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운전면허 정기·수시 적성검사에 인지기능검사 추가 및
수시 적성검사 관련 개인정보통보의 시기 단축 등〉

- 진중오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8108호)
- 강대식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8179호)
- 강득구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8274호)
- 진성준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8309호)
- 박덕흠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9218호)

2025. 7.

행 정 안 전 위 원 회

전 문 위 원 나 아 정

목 차

I . 개요	1
--------------	---

【진종오의원안】

1. 제안 경위	1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강대식의원안】

1. 제안 경위	3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3

【강득구의원안】

1. 제안 경위	4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4

【진성준의원안】

1. 제안 경위	6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6

【박덕흠의원안】

1. 제안 경위	7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7

II. 검토의견 9

1. 운전면허 결격사유 중 정신질환 등의 구체적인 내용을 법률에 명시(진성준·박덕흠의원안 제82조제1항제2호) 9
2. 정기·수시 적성검사에 인지기능검사 포함 등(진종오·박덕흠의원안 제87조제2항제2호, 제88조제1항) 13
3. 수시 적성검사와 관련 개인정보의 통보 시기 명시(진종오·강대식·강득구의원안 제89조제1항) 23
4. 운전적성판정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근거를 법률에 명시(진종오의원안 제90조·진성준의원안 제90조의2) 28
5. 적성검사를 받는 사람 등이 정신 질환에 해당하는 것으로 의심될 때 전문의의 정밀진단 의무화(강득구의원안 제90조) 32

I. 개요

【진중오의원안】

1. 제안 경위

가. 제 안 자 : 진중오의원 등 10인

나. 제 안 일 : 2025. 2. 12.

다. 회 부 일 : 2025. 2. 13.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치매 증상이 있는 70대 운전자가 인파가 밀집된 시장 안으로 돌진하는 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기존에 형식적으로 이루어지는 고령 운전자의 정기·수시 적성검사가 실제 운전능력을 평가할 수 있도록 강화될 필요가 있으며, 정기·수시 적성검사를 시행하는 한국도로교통 공단에 운전자의 운전가능성 여부와 운전 결격사유 대상 여부를 판정하는 판정위원회의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현재 수시 적성검사 관련 개인정보를 가진 기관이 그 개인정보를 경찰청장에게 통보하는 시기가 분기별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그 통보시기를 개인정보를 취득한 즉시 이루어지게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수시 적성검사 관련 개인정보를 가진 기관의 개인정보 통보 시기를 개인정보를 취득한 경우 지체 없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정기·수시 적성검사 시 모의도로주행 검사 및 인지기능검사가 포함되도록 하며, 한국도로교통공단에 운전자의 운전가능성 및 결격사유 해당 여부를 판정하는 각 분야전문위원 및 교통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운전적성판정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함으로써 적성검사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87조부터 제90조까지).

【강대식의원안】

1. 제안 경위

가. 제 안 자 : 강대식의원 등 10인

나. 제 안 일 : 2025. 2. 14.

다. 회 부 일 : 2025. 2. 17.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법령은 수시 적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사람의 후천적 신체장애 등에 관한 개인정보를 가지고 있는 기관의 장이 그 개인정보를 1년에 4번 분기별로 경찰청장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치매 진단을 받은 70대 운전자가 시장 안으로 돌진하여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하는 사고가 일어남에 따라 치매와 같이 수시 적성검사의 대상이 되는 질환을 가진 운전자의 개인정보가 신속하게 통보되어 수시 적성검사를 통해 이러한 운전자의 운전가능성 여부를 평가함으로써 수시 적성검사의 효용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수시 적성검사 관련 개인정보의 통보 기준일을 그 개인정보를 취득한 날로부터 7일 이내로 함으로써 수시 적성검사의 효용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89조제1항).

【강득구의원안】

1. 제안 경위

가. 제 안 자 : 강득구의원 등 10인

나. 제 안 일 : 2025. 2. 19.

다. 회 부 일 : 2025. 2. 20.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수시 적성검사 관련 개인정보를 가지고 있는 기관의 장이 그 개인정보를 분기별로 경찰청장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있으며, 운전면허시험 응시자나 정기·수시 적성검사 대상자가 운전면허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정신질환 등이 의심되는 경우 해당 분야 전문의의 정밀진단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치매 진단을 받은 고령운전자가 서울의 한 시장에서 운전 중 많은 사상자를 발생시키는 등 고령운전자 교통사고가 끊이지 않음에 따라 치매 등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운전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수시 적성검사 대상 관련 개인정보를 가지고 있는 기관의 장이 그 개인정보를 취득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로 경찰청장에게 통보하도록 하여 의료시스템과 운전면허 체계 간 정보공유를 신속하게 하

고, 운전면허시험 응시자나 정기·수시 적성검사 대상자 중 정신질환 등이 의심되는 경우 한국도로교통공단이 해당 분야 전문의의 정밀진단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함으로써 치매 등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운전자가 정부 관리 대상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9조제1항 및 제90조).

【진성준의원안】

1. 제안 경위

가. 제 안 자 : 진성준의원 등 11인

나. 제 안 일 : 2025. 2. 20.

다. 회 부 일 : 2025. 2. 21.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치매 등 안전운전에 장애가 되는 후천적 신체장애 등이 있는 경우에 수시 적성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2024년 7월에 시청역에서 발생한 역주행참사에 이어 2024년 12월 치매 진단을 받은 70대의 운전자가 운전하는 자동차가 목동 깨비시장으로 돌진하여 13명의 사상자가 발생하는 사고가 일어나는 등 대규모 사상자가 발생함에 따라 교통안전 대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운전면허 결격사유가 되는 후천적 신체장애 등의 요건을 명확히 하고, 정신질환 등이 의심되는 사람에 대해 운전적성판정위원회에서 운전가능성 여부와 수시적성검사 합격여부를 판정하는 등 교통안전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82조제1항제2호, 제88조제1항 및 제90조의 2 신설).

【박덕흠의원안】

1. 제안 경위

가. 제 안 자 : 박덕흠의원 등 11인

나. 제 안 일 : 2025. 3. 21.

다. 회 부 일 : 2025. 3. 24.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은 일정 기간이 지난 후 운전면허 갱신을 위하여 정기 적성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으며, 안전운전에 장애가 되는 후천적 신체장애 등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시 적성검사를 받도록 하여 운전능력 적합성을 평가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2024년 12월 서울 양천구에서 발생한 깨비시장 차량 돌진 사고 사례와 같이 인지기능에 장애가 있는 사람의 경우 순간적인 판단력 저하, 방향감각 상실, 반응속도 저하 등의 증상으로 인한 운전능력 저하로 교통사고 위험이 증가하고 있으나, 현행의 운전능력 적합성을 평가하는 정기 및 수시 적성검사에 운전자의 인지기능을 평가하는 검사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적성검사 대상 사유에 인지장애가 해당되지 않아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정기 및 수시 적성검사에 인지기능검사를 포함하도록 하고, 적성검사에서 운전능력 적합성을 평가하는 기준으로 작용하는 운전면허 결격사유 중 하나인 교통상의 위험과 장애를 일으킬 수 있는 정신질환의 예시로 인지장애를 열거함으로써 보다 안전한 도로교통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82조제1항제2호, 제87조제2항 및 제88조제1항 후단 신설).

Ⅲ. 검토의견

1. 운전면허 결격사유 중 정신질환 등의 구체적인 내용을 법률에 명시(진성준·박덕흠의원안 제82조제1항제2호)

진성준의원안 제82조제1항제2호는 현행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42조제1항1)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신질환, 뇌전증환자의 구체적인 내용을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하고, 대통령령에 위임 근거를 삭제하려는 것임.

박덕흠의원안 제82조제1항제2호는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신질환의 구체적인 내용을 법률로 상향하면서 인지장애의 내용을 추가적으로 명시하려는 것임.

현행	진성준의원안	박덕흠의원안
제82조(운전면허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다. 1. (생략) 2. 교통상의 위험과 장애를 일으킬 수 있는 <u>정신질환자</u>	제82조(운전면허의 결격사유) ① ----- ----- ----- ----- 1. (현행과 같음) 2. ----- ----- ----- <u>치매, 조현병,</u>	제82조(운전면허의 결격사유) ① ----- ----- ----- ----- 1. (현행과 같음) 2. ----- ----- ----- <u>치매, 조현병,</u>

1)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42조(운전면허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의 범위) ① 법 제82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치매, 조현병, 조현정동장애, 양극성 정동장애(조울병), 재발성 우울장애 등의 정신질환 또는 정신 발육지연, 뇌전증 등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운전을 할 수 없다고 해당 분야 전문의가 인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u>또는 뇌전증 환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u>	<u>조현정동장애, 양극성 정동장애(조울병), 재발성 우울장애 등의 정신질환과 정신 발육지연, 뇌전증 등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운전을 할 수 없다고 해당 분야 전문의(專門醫)가 인정하는-----</u>	<u>조현정동장애, 양극성 정동장애(조울병), 재발성 우울장애, 인지장애 등의 정신질환자 또는 뇌전증 환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u>
3. ~ 7. (생략) ②·③ (생략)	3. ~ 7. (현행과 같음) ②·③ (현행과 같음)	3. ~ 7. (현행과 같음) ②·③ (현행과 같음)

현행 「도로교통법」 제82조제1항제2호는 운전면허 결격사유를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은 “치매, 조현병, 조현정동장애, 양극성 정동장애(조울병), 재발성 우울장애 등의 정신질환 또는 정신 발육지연, 뇌전증 등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운전을 할 수 없다고 해당 분야 전문의가 인정하는 사람”을 운전면허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정하고 있음.

「도로교통법」의 운전면허 결격사유 규정은 교통상의 위험을 예방하려는 취지이지만, 운전을 할 수 있는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성격을 함께 가지고 있으므로 가능한 범위에서 법률에 직접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예측가능성 및 규범력을 강화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진성준의원안을 통해 추가하는 정신질환 등의 구체적인 내용은 현행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42조제1항과 동일한 내용임. 진성준의원안은 재발성 우울장애 등의 정신질환과 뇌전증 등으로 정상적인 운전을 할 수 없다고 해당 분야 전문의가 인정하는 사람을 결격사유로 규정함으로써 법률에 예시로 규정된 정신질환이 아닌 새로운 유형의 정신질환에 대해서도 동 요건으로 포섭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박덕흠의원안은 정신질환의 구체적인 예로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명시되지 않은 인지장애를 추가하고 있지만, 운전면허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대통령령에 따라 해당 분야의 전문의가 정상적인 운전을 할 수 없다고 인정되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박덕흠의원안에 따라 추가되는 인지장애의 경우에도 운전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인지장애만이 결격사유에 해당할 것으로 보임.

다만, 박덕흠의원안에서 추가하는 인지장애는 경도 인지장애(F06.7) 외에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른 질병코드가 부여되어 있지 않은데, 현행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예시로 규정된 치매, 조현병 등의 질병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른 코드 구분이 되어 있음.²⁾ 법률 의미의 명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박덕흠의원안에서 정신질환의 예시를 추가하는 경우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코드 구분이 되어 있는 질환을 추가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임.

2) ① 치매: 알츠하이머병에서의 치매 F00*, 혈관성치매 F01, 상세불명의 치매F03 등), ② 조현병: F20, ③ 조현정동장애: F25, ④ 양극성 정동장애(조울병): F31, ⑤ 재발성 우울장애: F31

참고로, 경찰청은 치매, 정신질환 등에 의한 교통안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운전면허 결격사유 및 수시 적성검사 사유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정신질환자 또는 뇌전증 환자’의 상세 범위와 수시 적성검사의 사유를 법률로 규정할 경우 향후 의학적 소견 등으로 인한 개정 필요시 신속하게 대응하지 못할 우려가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임.

2. 정기·수시 적성검사에 인지기능검사 포함 등(진중오·박덕흠 의원안 제87조제2항제2호, 제88조제1항)

박덕흠의원안과 진중오의원안은 정기·수시 적성검사에 인지기능검사를 추가하려는 것임. 진중오의원안은 이에 더해 정기·수시 적성검사에 모의 도로주행검사를 추가하며, 정기 적성검사의 대상을 제2종 운전면허증 갱신 당시 70세 이상인 사람을 65세 이상인 사람으로 확대함(안 제87조제2항제2호, 제88조제1항).

현행	진중오의원안	박덕흠의원안
제87조(운전면허증의 갱신과 정기 적성검사) ① (생략)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1항3)에 따른 운전면허증 갱신 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도로교통공단이 실시하는 정기(定期) 적성검사(適性検査)를 받아야 한다. <후단 신설>	제87조(운전면허증의 갱신과 정기 적성검사)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 ----- ----- ----- ----- ----- ----. 이 경우 정기 적성검사에는 모의 도로주행검사 및 인지기능검사가 포함되어야 한다.	제87조(운전면허증의 갱신과 정기 적성검사)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 ----- ----- ----- ----- ----- ----. 이 경우 정기 적성검사에는 인지기능검사를 포함하여야 한다.
1. 제1종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	1. (현행과 같음)	1. · 2. (현행과 같음)

(1) 현행 정기·수시 적성검사 내용

현행 정기 적성검사는 운전면허증 갱신기간에 도달한 제1종 운전면허 소지자와 70세 이상인 제2종 운전면허 소지자에 대해 신체와 질병에 대한 사항을 검사하고 있음. 신체 검사에서는 1종 운전면허 소지자의 시력(양안 0.8 이상, 각안 0.5 이상), 청력(55데시벨, 보청기 착용 40데시벨), 상하지 운동능력을 검사하고, 70세 이상인 제2종 운전면허 소지자의 시력(양안 0.5이상)을 검사함. 질병검사는 운전면허증을 갱신하는 사람이 병력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

현행 수시 적성검사는 치매 등 정신질환, 마약 또는 알코올 관련 장애 등으로 정상적인 운전을 할 수 없다고 해당 분야 전문의가 인정한 사람 및 후천적 신체 장애 등이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실시함. 치매 등 정신질환과 마약·알코올 중독은 운전적성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⁴⁾ 운전적성을 판정하고, 후천적 신체 장애의 경우에는 신체상태에 따른 기기조작능력을 검사하기 위해 운동능력을 측정하고 있음.

3) 「도로교통법」 제87조(운전면허증의 갱신과 정기 적성검사) ①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증을 갱신하여 발급받아야 한다.

1. 최초의 운전면허증 갱신기간은 제8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운전면허시험에 합격한 날부터 기산하여 10년(운전면허시험 합격일에 65세 이상 75세 미만인 사람은 5년, 75세 이상인 사람은 3년, 한쪽 눈만 보지 못하는 사람으로서 제1종 운전면허 중 보통면허를 취득한 사람은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2. 제1호 외의 운전면허증 갱신기간은 직전의 운전면허증 갱신일부부터 기산하여 매 10년(직전의 운전면허증 갱신일에 65세 이상 75세 미만인 사람은 5년, 75세 이상인 사람은 3년, 한쪽 눈만 보지 못하는 사람으로서 제1종 운전면허 중 보통면허를 취득한 사람은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4) 수시 적성검사자는 신체검사서 등을 운전적성판정위원회에 제출하고(「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84조제3항제3호), 정밀감정인(「운전적성판정위원회 운영규칙」 제2조제1호)이 의견서를 작성하며, 해당 의견서를 토대로 운전적성판정위원회의 위원들이 운전적성에 대한 판정을 실시함.

[정기 적성검사와 수시 적성검사의 대상 및 내용]

구분	대상	적성검사 내용*
정기 적성검사 (법 제87조②)	운전면허증 갱신기간에 도달한 1종 운전면허 소지자	○ 시력 : 양안 0.8 이상, 각안 0.5 이상 ○ 청력 : 55데시벨 보청기 착용 40데시벨 ○ 상하지 운동능력
	운전면허 갱신기간에 도달한 70세 이상의 2종 운전면허 소지자	○ 시력 : 양안 0.5이상
수시 적성검사 (법 제88조)	치매 등 정신질환 마약·알코올 중독	○ 운전적성판정위원회 심의
	후천적 신체 장애	○ 운동능력 측정 검사

※ 적성검사 내용 : 한국도로교통공단에서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2) 정기·수시 적성검사에 인지기능검사, 모의 도로주행검사 추가

진중오의원안은 정기·수시 적성검사에 모의 도로주행검사와 인지기능검사를 추가하려는 것이고, 박덕흠의원안은 정기·수시 적성검사에 인지기능검사를 추가하려는 것임.

진중오의원안과 박덕흠의원안은 인지기능검사와 모의 도로주행검사의 세부 내용을 규정하고 있지 않음. 현재 운영 중인 모의 도로주행검사와 인지기능검사의 사례로는 전라북도가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하여 2023년 전국 최초로 개발한 차량형 고령운전자 인지지각능력 검사시스템이 있음.⁵⁾

5) 출처: 전라북도 2023년 6월 9일 보도자료 “전북도,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줄이기에 앞장!”

<전라북도의 차량형 고령운전자 인지지각능력 검사시스템>



※ 자료: 전라북도 2023년 6월 9일 보도자료 “전북도,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줄이기에 앞장!” 참고

진중오의원안과 박덕흠의원안을 통해 정기 및 수시 적성검사에 도입하는 모의 도로주행검사와 인지기능검사가 인지능력의 저하로 교통사고 발생 위험이 높아진 운전자를 잘 식별해 낼 수 있는 경우 도로에서의 교통사고 발생을 줄이고, 안전한 교통이 확보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참고로, 현행 「도로교통법」 제73조는 75세 이상인 사람이 운전면허증 갱신 시 받는 교통안전교육에는 기억력과 판단능력 등 인지능력별 대처에 관한 사항⁶⁾을 포함하지만 정기·수시 적성검사에 인지기능검사는 포함되어 있지 않음.

전라북도의 차량형 고령운전자 인지지각능력 검사시스템은 현대카운티차량에 VR 모의주행(2대), 인지지각능력검사기, 시력계측기 탑재한 것으로, 전라북도는 2023년부터 노인정, 면사무소 등을 찾아가서 차량형 고령운전자 인지지각능력 검사시스템을 설치하고 교통안전교육, 인지지각능력 검사 등을 실시하고 있음.

- 6) 「도로교통법」 제73조(교통안전교육) ⑤ 75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운전면허를 받으려는 사람은 제83조제1항제2호와 제3호에 따른 시험에 응시하기 전에, 운전면허증 갱신일에 75세 이상인 사람은 운전면허증 갱신기간 이내에 각각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교통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3. 기억력과 판단능력 등 인지능력별 대처에 관한 사항

해외 사례로서 일본의 경우에는 2022년 일본 도로교통법을 개정하여 70세 이상인 사람에 대한 특례(제101조의4)를 마련했고, 면허증 갱신 기간에 75세 이상인 사람에 대해서는 인지기능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음.⁷⁾

다만, 진종오의원안과 박덕흠의원안이 입법 취지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인지기능검사와 모의 도로주행검사가 인지능력 저하 등으로 운전 시 위험한 상황을 야기할 가능성이 높은 운전자를 식별해 낼 수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 인지기능검사와 모의 도로주행검사의 실효성에 대한 검증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또한, 개정안 제87조제2항제1호에 따르면 제1종 운전면허를 갱신하는 모든 운전자가 정기적성검사에서 인지기능검사 등을 실시해야 하는데, 개정안의 취지는 인지기능이 저하된 운전자 또는 고령운전자에 대해 정기적성검사에서 인지기능검사 등을 실시하려는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제1종 운전면허 갱신대상자 중 인지기능 저하의 우려가 낮은 사람은 인지기능검사 등의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7) 출처: 일본 전자정부 법령검색 <https://laws.e-gov.go.jp/law/335AC0000000105/>

第百一條の四（七十歳以上の者の特例）（생략）

2 前項に定めるもののほか、免許証等の更新を受けようとする者で更新期間が満了する日における年齢が七十五歳以上のものは、更新期間が満了する日前六月以内に第百二條第一項から第四項までの規定により診断書を提出した場合その他認知機能検査等を受ける必要がないものとして内閣府令で定める場合を除き、当該期間内にその者の住所地を管轄する公安委員会又は第百八條の三十二の三第一項の認定を受けて同項の運轉免許取得者等検査を行う者が行つた認知機能検査等を受けていなければならない。

일본 도로교통법 제101조의4(칠십세 이상인 사람에 대한 특례)

② 전항에 정하는 것 외에 면허증등의 갱신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으로 갱신 기간이 만료하는 날에 연령이 75세 이상인 사람은 갱신 기간이 만료하는 일전 6월 이내에 제102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의해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 그 외 인지기능검사 등을 받을 필요가 없는 경우로서 내각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해당 기간 내에 그 사람의 주소지를 관할하는公安위원회 또는 제108조의32의3제1항의 인정을 받아 동항의 운전면허 취득자 등 검사를 실시하는 자가 실시하는 인지기능검사 등을 받아야 한다.

참고로, 경찰청은 현행 「도로교통법」이 75세 이상 고령자의 면허갱신시 ‘인지능력 자가진단 및 그 결과에 따른 안전운전 요령’ 등이 포함된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고, 수시 적성검사 시 대상자로부터 진단서 등을 제출받고 한국도로교통공단에서 위촉한 정밀감정인의 의견을 토대로 합격 여부를 판정하는 등 인지기능 장애로 인한 교통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이미 시행하고 있음에도 인지기능 저하 가능성에 따른 합리적인 기준 없이 모든 운전자에게 인지기능 검사를 하도록 하는 것은 비례원칙에 어긋날 소지가 있고, 비효율적인 행정자원 운용을 야기할 여지가 있다는 의견임.

그리고, 경찰청은 적성검사 등에서 인지기능을 검사하기 위한 운전능력 진단·평가 장비인 VR 운전능력자가진단시스템의 시범운영이 2025년 하반기부터 75세 이상 교통안전교육을 대상으로 예정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향후 시범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모의 도로주행검사와 인지기능검사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임.

(3) 정기 적성검사의 대상을 65세 이상의 제2종 면허소지자로 확대

진중오의원안 제87조제2항제2호는 제2종 면허소지자의 정기 적성검사 대상을 면허갱신기간에 70세 이상에서 65세 이상으로 확대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현재 실시 중인 70세 이상인 제2종 운전면허 소지자의 정기 적성검사(시력 검사 : 양안 0.5 이상) 실시 현황을 살펴보면, 정기 적성검사 대상자 수는 92만명이고, 이 중 59만명(64.3%)이 정기 적성검사를 받았으며, 같은 인원이 정기 적성검사에 합격했으나, 70세 이상 운전자 중 35.7%가 정기 적성검사에 응시하지 않음.

[70세 이상 제2종 운전면허 소지자의 정기 적성검사 실시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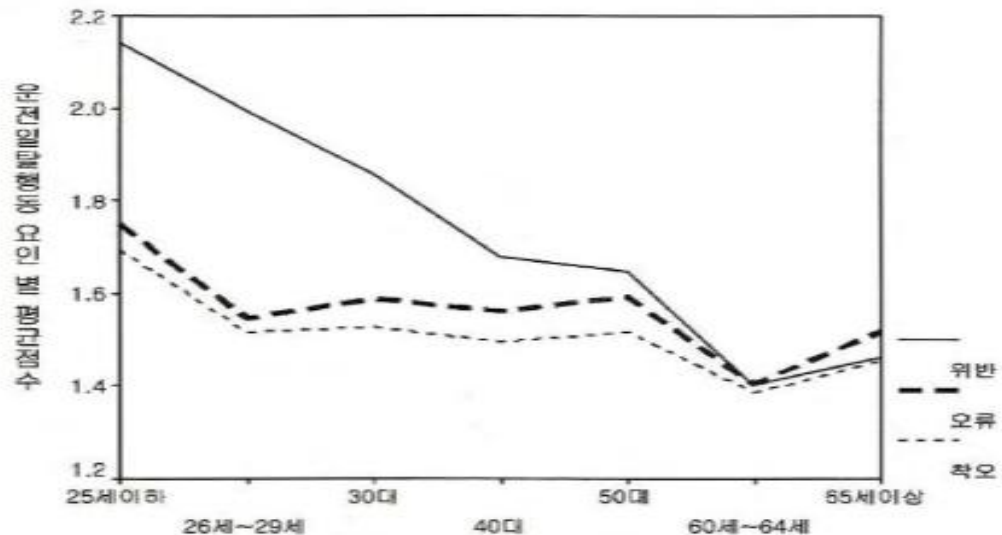
연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합계
70세 이상 정기 적성검사 대상자 수	126,715	144,564	230,336	202,672	218,293	922,580
70세 이상 정기 적성검사를 받은 인원수	55,374	96,253	157,458	132,976	151,571	593,632
합격자 수	55,374	96,253	157,458	132,976	151,571	593,632

※ 자료 : 한국도로교통공단

진중오의원안을 통해 정기 적성검사의 대상자를 65세 이상의 제2종 운전면허 소지자까지로 확대하는 경우에는 65세부터 70세까지의 제2종 운전면허 소지자 중 운전 적성이 낮은 사람을 식별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참고로, 2006년에 실시된 운전일탈행동의 요인에 대한 연구보고서에서는 65세 이상부터 운전일탈행동(위반, 오류, 착오 등) 점수가 다시 상승하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65세 이상 운전자는 자신도 모르게 하는 실수로 인해 위험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행동인 오류 점수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조사됨.⁸⁾

[2006년 연구 결과: 연령대에 따른 운전일탈행동 요인 평균점수 변화]



※ 자료 : 이순철, “고령운전자 교통사고의 심리학적 요인”, 「한국심리학회지」 2006 Vol 12. 161면

다만, 2025년 현 시점을 기준으로 65세부터 70세까지의 사람이 다른 연령대와 비교하여 운전능력이 현저히 감소한다는 과학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은 측면이 있어 보이고, 해외의 사례 중에는 75세에 대한 특례를 마련하고 있는 경우도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하면, 65세부터 70세까지 모든 사람을 정기 적성검사의 대상으로 추가하는 것은 교통사고 예방 효과가 크지 않을 수 있는 반면, 정기적성 검사의 대상 확대는 일반 국민에게 행정적 부담을 확대하는 점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임.

참고로, 현재 전 연령대에서 정기 적성검사를 실시하고 있는 제1종 운

8) 이순철, “고령운전자 교통사고의 심리학적 요인”, 「한국심리학회지」 2006 Vol 12. 149면~167면

전면허의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연령별 검사결과를 살펴보면, 전체 대상자 725만명 중 655만명(90.3%)이 검사를 받아 합격했고, 이 중 70세 이상은 135만명 중 100만명(74.0%)이 검사를 받아 합격하여 전체 합격률보다 16.3%p 낮지만, 65세부터 70세까지는 47만명 중 42만명(88.6%)이 검사를 받아 합격하여 전 연령대의 합격률과 차이는 1.7%p임.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제1종 운전면허 정기적성검사 실시 현황]

구분	2020년~2024년 제1종 운전면허 전체	2020년~2024년 제1종 운전면허 70세 이상	2020년~2024년 제1종 운전면허 65세~70세
정기 적성검사 대상자 수	7,249,178명	1,348,669명	469,319명
정기 적성검사를 받은 인원 수	6,545,296명	997,483명	415,652명
합격자 수	6,545,296명	997,483명	415,652명

※ 자료: 한국도로교통공단에서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해외 사례로서 일본의 경우에는 2022년 일본 도로교통법을 개정하여 75세 이상인 사람에 대한 특례⁹⁾를 마련하여 면허증 갱신 기간에 75세 이상인 사람에 대해서는 인지기능검사 등을 받도록 하고 있음.

참고로, 경찰청은 정기 적성검사 대상자의 나이를 하향하는 것은 국민에게 부담을 주는 규제이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임.

9) 일본 도로교통법 제101조의4(칠십오세 이상인 사람에 대한 특례)

출처: 일본 전자정부 법령검색 <https://laws.e-gov.go.jp/law/335AC0000000105/>

경향신문 2022년 5월 10일 기사, “일본 75세 이상 운전자, 면허갱신 때 기능시험 다시 봐야”

3. 수시 적성검사와 관련 개인정보의 통보 시기 명시(진종오·강대식·강득구의원안 제89조제1항)

개정안은 후천적 신체장애 등 수시 적성검사와 관련된 개인정보를 가지고 있는 기관이 경찰청장에게 개인정보를 통보하는 시기를 현행 「도로교통법 시행령」에 따른 분기(3개월)보다 짧은 시기를 규정하려는 것으로 진종오의원안은 취득한 경우 지체없이, 강대식의원안은 취득한 날부터 7일 이내, 강득구의원안은 취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통보하도록 하려는 것임.

현행	진종오의원안	강대식의원안	강득구의원안
제89조(수시 적성검사 관련 개인정보의 통보)	제89조(수시 적성검사 관련 개인정보의 통보)	제89조(수시 적성검사 관련 개인정보의 통보)	제89조(수시 적성검사 관련 개인정보의 통보)
① 제88조제1항에 따라 수시 적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사람의 후천적 신체장애 등에 관한 개인정보를 가지고 있는 기관 가운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장은 수시 적성검사와 관련이 있는 개인정보를	① ----- ----- ----- ----- ----- ----- ----- ----- ----- ----- ----- ----- ----- ----- -----	① ----- ----- ----- ----- ----- ----- ----- ----- ----- ----- ----- ----- ----- ----- -----	① ----- ----- ----- ----- ----- ----- ----- ----- ----- ----- ----- ----- ----- ----- -----

경 찰 청 장 에 게 통보하여야 한다.	취 득 한 경 우 지 체 없 이 경 찰 청 장 에 게 - -----.	취 득 한 날 로 부 터 7 일 이 내 에 경 찰 청 장 에 게 - -----.	취 득 한 날 로 부 터 1 개 월 이 내 에 경 찰 청 장 에 게 - -----.
② 제1항에 따라 경 찰 청 장 에 게 통보하여야 하 는 개인정보의 내용 및 통보 방법과 그 밖 에 개인정보의 통보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②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현행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58조¹⁰⁾는 근로복지공단 이사장,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보건복지부장관, 병무청장, 시장·군수·구청장 등이 시행령 [별표 4]의 개인정보를 매 분기 1회 이상 경찰청장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동 시행령에 따라 경찰청은 매 분기(3개월)별로 개인정보를 통보받고 있음.

10)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58조(수시 적성검사 관련 개인정보의 통보) ① 법 제8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장”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병무청장
 2. 보건복지부장관
 3.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4. 육군참모총장, 해군참모총장, 공군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
 5.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근로복지공단 이사장
 6. 「보험업법」 제176조에 따른 보험요율 산출기관의 장
 7.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1조의2 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1조에 따라 설립된 공제조합의 이사장
 8.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에 따른 치료감호시설의 장
 9.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10.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 ②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법 제89조제2항에 따라 별표 4의 개인정보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분기 1회 이상 경찰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년 동안 기관별 개인정보 통보현황을 살펴보면, 건강보험공단 48,455건, 근로복지공단 19,609건, 시·군·구청장 6,308건, 보험개발원 2,838건, 병무청 2,682건으로 통보 건수가 많음.

[기관별 개인정보 통보현황]

구분	2022년				2023년				2024년				합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각군 사령관	5	6	6	8	4	5	2	5	3	3	1	1	49
국민연금공단	80	81	96	91	56	148	91	54	-	-	-	-	697
근로복지공단	2,379	2,779	2,639	1,007	2,679	-	-	-	-	-	-	8,126	19,609
버스공제조합	12	8	3	7	7	3	4	4	1	-	6	5	60
병무청	168	228	250	192	131	435	108	754	110	112	123	71	2,682
보건복지부	-	527	328	410	424	526	430	502	447	448	382	461	4,885
보험개발원	222	264	271	-	-	701	267	247	220	228	220	198	2,838
시군구청장	425	472	557	404	528	507	522	462	878	640	566	347	6,308
시도지사	45	73	75	50	51	105	50	75	71	47	85	74	801
건강보험공단	25	5,020	34	1,819	5,847	5,394	5,329	5,153	5,188	4,852	4,602	5,192	48,455
전국화물공제조합	20	22	18	18	15	22	19	17	10	16	14	20	211
치료감호소	11	-	5	9	6	9	10	5	12	7	10	7	91
택시공제조합	-	-	-	2	-	1	-	-	-	-	-	-	3
합계	3,392	9,480	4,282	4,017	9,748	7,856	6,832	7,278	6,940	6,353	6,009	14,502	86,689

※ 자료: 경찰청

개정안을 통해 수시 적성검사와 관련된 개인정보의 통보 기간을 단축하면 수시 적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운전면허 소지자들의 적성검사를 보다 빠른 시간에 받도록 함으로써 운전가능성 여부를 신속하게 평가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참고로,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전체 수시적성검사 대상자는 12만 6천 명이고, 이 중 행정기관 등이 통보한 대상자 수가 12만 1천명임. 전체 검사 대상자 12만 6천명 중 수시 적성검사를 실시한 인원은 4만 5천명 이고, 수시적성 검사 미필로 취소된 경우는 4만 1천명이며, 그 밖의 사유로 운전면허가 말소된 경우는 2만명임.

[수시 적성검사 실시현황]

(단위: 명, 건)

구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합계
수시 적성검사 대상자 수(전체)		25,630	26,205	20,956	27,650	25,597	126,036
	행정기관 등이 통보한 수시 적성검사 대상자 수	25,305	25,306	19,746	26,683	24,582	121,622
	자진신고, 경찰관 신고 등 기타 대상자 수	325	899	1,210	967	1,015	4,416
전체 대상자 중 수시 적성검사를 실시한 인원 수		8,104	12,352	13,037	7,938	3,647	40,996
전체 대상자 중 수시 적성검사 미필로 취소 건수		13,282	9,664	5,252	12,794	4	40,996
통지자 수*		89	115	108	1,043	18,539	19,894
면허 말소 건수**		4,155	4,074	2,559	5,875	3,407	20,070

* 통지자 : 수시적성검사 대상자 우편고지, 공고중, 연기자 등 진행 중 상태

** 면허말소 : 대상자의 운전면허 말소(사망, 음주운전 취소 등)

※ 자료 : 한국도로교통공단

다만, 개정안들은 수시 적성검사와 관련된 개인정보를 가지고 있는 기관들이 경찰청장에게 통보해야 하는 시기를 취득일로부터 지체 없이(진종오의원안), 7일 이내(강대식의원안), 1개월 이내(강득구의원안)로 각각 다르게 규정하고 있는데, 해당 기관들이 개정안에 규정된 기간 내에 정보를 통지하는 것이 가능한지, 그리고 개정안에서 정한 기한 내에 정보를 전송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정보처리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는지 등에 대해서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임.

참고로, 국방부는 수시 적성검사 대상자의 개인정보를 관계 기관이 취득시 지체없이 경찰청장에게 통보하도록 하는 규정에 대해서는 해당 정보를 지체없이 경찰청에 통보하는 전산자동화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행정적 부담이 상당히 클 것으로 우려되고, 수시 적성검사 대상자의 개인정보인 병무청장의 신체등급 판정에 대해 행정소송이 제기되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의 취득시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의견임.

경찰청은 수시 적성검사의 효용성 제고를 위해 기관별 대상자의 개인정보가 신속히 통보되어야 하는 것에는 공감하지만 통지 주기와 같이 수시 적성검사의 실시에도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실무상 필요에 따른 개정수요 발생 시 유연하고 빠른 대응이 필요하므로 현재처럼 하위법령인 대통령령에 위임함이 적절하다는 의견임. 그리고 경찰청은 강득구의원안과 같은 취지로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58조의 통보 시기를 분기별 1회에서 월 1회로 단축하는 개정을 추진 중임.

4. 운전적성판정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근거를 법률에 명시

(진중오의원안 제90조·진성준의원안 제90조의2)

진중오의원안과 진성준의원안은 현행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87조11)에 규정된 운전적성판정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법률에 상향하여 직접 규정려는 것임.

현행	진중오의원안	진성준의원안
제90조(정신 질환 등이 의심되는 사람에 대한 조치) 한국도로교통공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제82조 제1항 제2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분야 전문의(專門醫)의 정밀진단을 받게 할 수 있다. 1. 제83조에 따른 운전면허시험 중인 사람	제90조(정신 질환 등이 의심되는 사람에 대한 조치 등)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제90조(정신 질환 등이 의심되는 사람에 대한 조치) (현행과 같음)

11)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87조(운전적성판정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① 법 제90조에 따라 전문의의 정밀진단을 받은 사람에 대한 운전가능성의 여부와 영 제56조에 따른 수시적성검사의 합격여부를 판정하기 위하여 한국도로교통공단의 운전면허시험장마다 운전적성판정위원회(이하 “판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판정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한국도로교통공단의 운전면허시험장의 장이 되고, 위원은 교통전문가, 해당분야 전문의, 한국도로교통공단 소속 직원 중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③ 판정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판정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은 수시적성검사의 합격여부의 판정과 관련하여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⑤ 그 밖에 판정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한국도로교통공단이 정한다.

2. 제87조제2항 또는 제88조제1항에 따른 적성검사를 받는 사람

<신 설>

<신 설>

<신 설>

② 한국도로교통공단에 제1항 각 호의 사람에 대한 운전가능성 여부와 제82조제1항제2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하기 위하여 각 분야 전문의 및 교통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운전적성판정위원회를 둔다.

③ 제2항에 따른 운전적성판정위원회의 구성·운영과 판정기준·방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90조의2(운전적성판정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① 제90조에 따라 전문의의 정밀진단을 받은 사람에 대한 운전가능성의 여부와 제88조제1항에 따른 수시 적성검사의 합격여부를 판정하기 위하여 한국도로교통공단의 운전면허시험장마다 운전적성판정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u>“운전적성판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u> <u>② 운전적성판정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u> <u>③ 운전적성판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운전면허시험장의 장이 되고, 위원은 교통전문가, 해당 분야 전문의, 한국도로교통공단의 직원 중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u> <u>④ 그 밖에 운전적성판정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u>
--	--	--

현행법 체계에서 운전적성판정위원회의 설치 근거, 구성 및 의결 정족수 등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87조는 규정하고 있음. 개정안은 운전적성판정위원회의 설치근거를 법률로 상향하려는 것임.

진중오의원안 제90조제2항은 운전적성판정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같은 조 제3항은 운전적성판정위원회의 구성·운영과 판정 기준·방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행정안전부령에 위임하고 있음.

진성준의원안 제90조의2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87조제1항·제2항에서 규정한 것과 동일한 내용으로 운전적성판정위원회의 설치, 구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행정안전부령에 위임하고 있음.

운전적성판정위원회는 운전자의 운전가능성 여부를 평가함으로써 국민이 차량을 운전할 수 있는 권리 의무에 영향을 준다는 점을 고려하면 동 위원회의 설치를 위한 법적 근거를 현행과 같이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아닌 법률로 상향함으로써 운전적성판정위원회의 규범력을 강화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참고로, 경찰청은 운전적성판정위원회의 구성 및 위원의 자격 등 세부 요건까지 법률로 규정하는 것은 인원의 변경이나 다른 분야 전문가의 위원 임명 필요성 등 실무상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지 못하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임.

5. 정신 질환 등이 의심되는 사람에 대한 전문의의 정밀진단 의무화(강득구의원안 제90조)

개정안은 운전면허시험 중인 사람과 정기 또는 수시 적성검사를 받는 사람이 교통상 위험을 일으킬 수 있는 정신질환자 등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분야의 전문의의 정밀진단을 받게 하도록 하려는 것임(강득구의원안 제90조).

현행	강득구의원안
제90조(정신 질환 등이 의심되는 사람에 대한 조치) 한국도로교통공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제82조제1항 제2호 또는 제5호 ¹²⁾ 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분야 전문의(專門醫)의 정밀진단을 받게 할 수 있다.	제90조(정신 질환 등이 의심되는 사람에 대한 조치) ----- ----- ----- ----- ----- -----하
1. 제83조에 따른 운전면허시험 중인 사람	1. ~ 2. (현행과 같음)
2. 제87조제2항 또는 제88조제1항에 따른 적성검사를 받는 사람	

12) 「도로교통법」 제82조(운전면허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다.
1. (생략)
2. 교통상의 위험과 장애를 일으킬 수 있는 정신질환자 또는 뇌전증 환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3. 4. (생략)
5. 교통상의 위험과 장애를 일으킬 수 있는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또는 알코올 중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운전면허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애를 일으킬 수 있는 정신질환자 또는 알코올 중독자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57조(운전면허시험의 응시)제1항제3호·제4호, 제84조(수시 적성검사)제3항은 운전면허시험 응시자와 수시 적성검사를 통보받은 사람이 한국도로교통공단에 질병·신체에 관한 신고서와 신체검사서 등을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¹³⁾

13)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57조(운전면허시험의 응시) ① 법 제8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운전면허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42호서식(제1종 보통 및 제2종 운전면허시험에 응시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42호의2서식을 말한다)에 따른 자동차운전면허시험 응시원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경찰서장 또는 한국도로교통공단에 제출하고, 신분증명서를 제시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신분증명서 제시를 갈음하여 전자적 방법으로 지문정보를 대조하여 본인 확인을 할 수 있다.

1. 사진(신청일부터 6개월 내에 모자를 벗은 상태에서 배경 없이 촬영된 상반신 컬러사진으로 규격은 가로 3.5센티미터, 세로 4.5센티미터로 한다. 이하 같다) 3장
 2. 병력신고서(제1종 대형 및 특수 운전면허시험에 응시하려는 경우만 해당한다)
 3. 질병·신체에 관한 신고서(제1종 보통 및 제2종 운전면허시험에 응시하려는 경우만 해당한다)
 4. 운전면허시험 신청일부터 2년 이내에 발급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한쪽 눈만 보지 못하는 사람이 제1종 보통면허시험에 응시하려는 경우에는 다목에 따른 서류만 해당한다)로서 영 제45조제1항에 따른 운전면허의 적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는 것. 다만, 제2항에 따라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은 포함하지 않을 수 있다.
 - 가. 「의료법」 제3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른 의원, 같은 항 제3호가목 및 바목에 따른 병원 및 종합병원에서 발행한 별지 제42호서식(제1종 보통 및 제2종 운전면허시험에 응시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42호의2서식을 말한다)에 첨부된 양식의 신체검사서
 - 나.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 결과 통보서
 - 다. 「의료법」 제17조에 따라 의사가 발급한 진단서
 - 라. 「병역법」 제11조에 따른 병역판정 신체검사(현역병지원 신체검사를 포함한다) 결과 통보서
- ②·③ (생략)

제84조(수시 적성검사) ①·② (생략)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수시 적성검사의 통지를 받은 사람은 별지 제64호서식(제1종 보통 및 제2종 운전면허를 소지한 사람의 경우에는 별지 제65호서식을 말하고, 국제운전면허증 또는 상호인정외국면허증을 받은 사람의 경우에는 별지 제74호서식을 말한다)에 따른 수시 적성검사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도로교통공단에 제출하고, 신분증명서를 제시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신분증명서 제시를 갈음하여 전자적 방법으로 지문정보를 대조하여 본인 확인을 할 수 있다.

1. 삭제
2. 사진 2장
3. 적성검사 신청일부터 2년 이내에 발급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제1종 보통면허를 받은 사람으로서 한쪽 눈만 보지 못하는 사람의 경우 다목에 따른 서류만 해당한다)로서 검사하려는 적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는 것. 다만, 제4항에 따라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은 포함하지 않을 수 있다.
 - 가. 「의료법」 제3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른 의원, 같은 항 제3호가목 및 바목에 따른 병원 및 종합병원에서 발행한 별지 제64호서식(제1종 보통 및 제2종 운전면허 소지자의 경우에는 별지

한국도로교통공단은 현행 「도로교통법」 제90조에 따라 운전면허시험 응시자와 수시 적성검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사람으로부터 제출받은 신체검사서 등에 대해 「운전적성판정위원회 운영규칙」 제2조제1호에 따른 정밀감정인이 정밀진단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음. 정밀감정인이 실시한 정밀진단은 「운전적성판정위원회 운영규칙」 제4조제2항에 따라 운전적성판정위원회의 의결의 기초자료가 됨.¹⁴⁾

위의 규정들을 종합하면, 현행 「도로교통법」 제90조는 정신질환자 등으로 의심되는 사람에 대해 정밀진단을 받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현행 제도는 정신질환자 등으로 의심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항상 정밀진단을 실시하는 방식으로 운영중임.

제65호서식을 말하고, 국제운전면허증 또는 상호인정외국면허증을 받은 사람의 경우에는 별지 제74호서식을 말한다)에 첨부된 양식의 신체검사서

나.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 결과 통보서

다. 「의료법」 제17조에 따라 의사가 발급한 진단서

라. 「병역법」 제11조에 따른 병역판정 신체검사(현역병지원 신체검사를 포함한다) 결과 통보서

④ ~ ⑥ (생략)

14) (한국도로교통공단) 「운전적성판정위원회 운영규칙」 제2조(정의) 이 규칙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밀감정인"이란 도로교통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2조제1항제2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만한 합당한 이유가 있는 대상자의 운전 적성에 대해 과학적이고 전문적인 소견을 제시할 수 있는 전문의로서 위원장이 위촉한 사람을 말한다.

2. (생략)

제4조(위원회의 업무)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법 제82조제1항제2호 및 제5호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만한 합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해당자의 운전 적성을 심의·의결한다.

1. 법 제83조에 따른 운전면허시험 중인 사람

2. 법 제87조에 따른 적성검사를 받는 사람

3. 법 제88조에 따른 수시적성검사를 받는 사람

4. 그밖에 위원회를 통해 운전 적성을 의결할 필요가 있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사람

② 위원회의 의결은 법 제90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84조에 따라 전항의 대상자가 제출한 소견서 등을 토대로 한다.

③ ~ ⑤ (생략)

제10조(위원회의 회의) ① ~ ⑤ (생략)

⑥ 정밀감정인은 대상자의 운전 적성에 관한 의학적 소견을 진술하되, 의결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⑦ (생략)

개정안은 「도로교통법」 제90조에 따른 전문의의 정밀진단을 의무화함으로써, 현행 「도로교통법」 제90조 규정을 현행의 제도 운영에 부합하도록 하고, 치매 등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운전자가 정부 관리 대상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하려는 취지임.

참고로, 경찰청은 한국도로교통공사에서 운전면허시험 중이거나 정기·수시 적성검사를 받는 사람에게 정신질환 등을 인정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실시할 수 있는 전문의 정밀진단을 의무화할 경우 행정기관에 부담이 될 뿐 아니라, 정밀진단 실시 사유인 ‘상당한 사유’가 지나치게 모호함에도 의무로 규정한 결과 국민에 대한 과도한 규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임.

문 의 처
02) 6788-5345